사무총장 선출 등의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13조 1항 및 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제11조 1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2.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해임

제2장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제2조 (선거관리) 본 시행세칙에 의한 선출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관리한다.

제3조(선거권) 선거권은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일자 전일까지 당원권을 가진 전국위원에 있다.

제4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5조와 같다.

제5조(선거공고) 중선관위는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임기만료나 사퇴 등으로 선출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선거를 공고한다.

제6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 서류 등) 후보가 되려는 자는 중선관위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신청서, 추천서, 출마의 변, 후보자 약력을 작성하여 중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후보자 추천) 후보가 되려는 자는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원 1%의 서명에 의한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서류와 함께 중선관위에 제출한다.

제7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중선관위가 정하되 최소 7일로 한다.
② 후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운동 할 수 있다.
1. 이메일 발송 2회 이내

2. 전화 : 단,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는 할 수 없다.
3. 문자메시지 단문 발송 2회 이내
4. 당원게시판 및 SNS 공간을 통한 선전

③ 위 2항 1호 및 3호의 발송은 후보자 요청에 따라 중선관위가 대행한다.

④ 중선관위는 후보자에게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선거인 명단을 제공 및 환수한다.

제8조(선출)

① 각 선출 대상에 1표씩 행사하고 선거인 과반수가 투표하여 유효투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 1항에서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9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는 인터넷투표로 하되, 투표마감일에 전국위원회가 열릴 경우에는 전국위원회 당일에 한하여 현장투표를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터넷투표는 투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5일간 실시한다.

③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현장투표는 인터넷투표 마감 시점부터 시작하며 재석한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면 마감한다.

⑤ 현장투표 없이 인터넷투표만 실시할 경우에는 인터넷투표 마감 직후 개표를 실시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개표 결과를 공고한다.

⑥ 인터넷투표와 현장투표를 함께 실시할 경우에는 현장투표를 마감한 직후 현장투표, 인터넷투표 순서로 개표를 실시하며 개표 결과를 합산하여 발표한다.

제10조(보궐선거)

① 당직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해임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사퇴 등으로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자신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3장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해임

제11조(해임 발의)
①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해임 안건은 상임집행위원회 또는 전국위원 1/3 이상의 서명에 의해 전국위원회 7일 전까지 발의한다.
② 전국위원회가 예정되지 않은 시점에 해임 안건이 발의될 경우 전국위원회 의장은 즉시 임시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2조(해임 결정)
①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이하 동일) 해임 안건은 전국위원회 개회 즉시 첫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해임 안건의 제안 설명, 찬반토론 등 의결 방식은 전국위원회 일반 안건 의결 절차를 준용한다. 단, 표결은 무기명 찬반투표로 한다.
③ 해임은 전국위원 재적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해임의 효력)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해임의 효력은 해임 안건이 가결되는 시점부터 발생하며, 현직에서 퇴임하는 것으로 그친다. 징계 등의 절차는 별도의 당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 이 시행세칙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2017년 12월 13일 8기 56차 대표단회의 제정
2018년 09월 04일 8기 88차 대표단회의 개정
2018년 12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 05차 회의 개정
2019년 10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 05차 회의 개정